

2022. 7. 28(목) 14:00

제8차 규정심의위원회 안건

〈안건〉

1. 「교원인사규정」 제29조④항 재임용 유예에 대한 해석 자문(교무학사팀)



우석대학교

수신자 기획처장(기획평가팀장)

(경유)

제 목 재임용 유예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교원인사규정 제29조(재임용 유예) ④항에 대한 규정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요청내용

- 교원인사규정 제29조 ④항이 재임용 대상자의 휴직 기간을 전체 유예기간으로 산정 할 수 있는지 문의

나. 교원인사규정 29조

제29조(재임용 유예) ①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임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을 유예받은 교원은 재임용 유예기간 내에 당해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임용 유예는 당해 직급에서 1회에 한한다.

③제1항에 의해 재임용이 유예된 교원이 유예기간 동안 재임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 퇴직한다.

④재임용 대상교원이 휴직중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재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끝.

교무처장										직인생략			
주임	정일남	교무학사팀장	황대우	교무처장	07/11 김성희								
참조자													
시행	교무학사팀-8554			(	2022. 7. 11.	)	접수	기획평가팀-1274			(	2022. 7. 12.	)
접수	주임	이현영	부장	박해영	기획처장	전일 07/12	이미경						
우 55338 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 http://www.woosuk.ac.kr													
전화 063-290-1075 // 전송 063)290-1030 // jjang@gw.woosuk.ac.kr // 공개													

교원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임용, 신분 보장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구분) ①교원은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7.4.)

②전임교원은 호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외국인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정년트랙 또는 비정년트랙의 명칭은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2016.4.28.)

③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 객원교수, 학술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리서치펠로우연구교수를 말한다. (개정 2006.5.29., 2009.8.11., 2012.1.1., 2017.3.1., 2019.7.4.)

제3조(적용범위) ①호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제4조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4.28.)

②성과급적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외국인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6.29., 2016.4.28., 2019.7.4.)

제4조(교원의 자격) 교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4.28)

제5조(교원의 직급)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2.7.22)

제6조(정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 정년을 만70세로 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연구업적과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강의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자

제7조(겸직)①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의거 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교원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 시작 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임용절차)①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②교원의 임용은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다만,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면직은 발령의 통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임용기간) ①교원의 임용기간은 직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5년 (개정 2012.7.22)
4. (삭제 2012.7.22)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원의 첫 번째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2.12)

제10조(임용기간 계산)①임용기간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제3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0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임용기간에 포함하나, 제2호, 제4호 내지 제9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이를 임용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11조(신규임용의 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신규임용의 방법 및 절차)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채용에 의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외 석학 또는 업적이 탁월하여 본교의 위상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본교 특성화 분야 또는 해당학과의 위상정립 및 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개정2006.10.26)
3. 재외 한국인 학자, 원어민 및 특수과목 전공자
4. 10년 이상 의사 또는 한의사로 재직하였거나 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병원 및 한의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상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5. 본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해당학과와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따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인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신설2006.10.26.)
6.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신설 2012.1.1)

②충원인원, 채용공고 및 채용심사 등 신규임용의 세부적인 절차 및 관련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총장은 채용심사에서 최종 선발된 신규임용 후보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신규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임용교원의 자격) ①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는 제4조의 교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연구능력과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는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의 교원이나 기타 전공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박사학위 소지자의 신규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의 직급) ①교원의 신규임용시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대학교 또는 해당 분야 연구기관에서의 교육, 연구경력이 합산하여 7년 이상인 자의 경우 교육 및 연구능력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②<삭제 2011.5.3>

제15조(신규임용 서류) ①교원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

1. 교원 인사기록 카드 2부
2. 이력서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단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4. 학력증명서 각 1부
5.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6. 신원진술서 2부
7. 가족관계증명서 2부
8.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된 것) 2부
9. (삭제 2012.1.1)
10. (삭제 2012.1.1)
11. 기본증명서 2부 (신설 2016.4.28)

②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16조(호봉의 확정 및 정정) ① <삭제>

②교원의 신규채용 시 초임호봉은 경력년수를 교원경력년수환산율표(별표1)에 따라 환산하여 확정한다. 다만, 초임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08.8.26., 2020.6.18.)

③교원이 재직 중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확정한다.

④호봉의 확정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 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⑤교원의 초임호봉 확정 시 25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문적 업적, 해당분야에서의 지명도, 학교 및 학과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4.25)

제17조(승급) ①교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교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8조(승급의 제한)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12개월
나. 감봉 6개월

제3장 승진임용

제19조(승진)승진소요기간이 경과한 교원에 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0조(승진시기)교원의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자로 행한다.

제21조(승진소요기간)①교원의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교수 : 5년
2. 조교수-부교수 : 6년 (개정 2012.7.22)
3. (삭제 2012.7.22)

②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타 대학교 전임교원이었던 교원의 경우, 최초 승진 시 전직 대학교에서 재직했던 기간을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제22조(승진요건) ①교원의 승진임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수 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에 한하여 별도로 정하는 정년보장심사기준에 따라 정년보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까지 임용한다.

②교원의 승진에 필요한 직급별,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교육 및 연구업적은 다른 영역의 잉여 점수를 이관 받지 못한다. 다만, 봉사 및 산학협력 업적의 경우 영역별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업적별 최저기준점수의 50%까지 다른 영역의 잉여 점수로 대체가능하다. (개정 2009.2.12, 2012.1.1, 2012.7.22., 2016.4.28.)

승진 직급	평가 대상 기간	영역별 최저기준점수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인문사회 예체능계	이공계
부교수 교수	6년	450	390	210	60	120
	5년	375	325	175	50	100

③제2항의 연구업적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소기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게재 논문점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예·체능계 교원들은 일반교원의 직급별 기준의 1/2을 적용한다. 단, 산학협력업적 중 산학협력연구활동영역의 점수로 최소기준점수의 100%까지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01.15., 2014.2.27)

1. (삭제 2012.7.22)

2. 부교수 : 225점 이상 (개정 2012.7.22)

3. 교수 : 185점 이상

(조항 개정 2009.2.12, 2012.1.1)

④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양방 임상교원의 경우에는 영역별 구분 및 승진대상 직급의 구분 없이 매 학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2.12)

⑤(조항 개정 2009.2.12.)(조항 삭제 2012.1.1)

⑥(조항 신설 2009.2.12, 개정 2009.11.17)(조항 삭제 2012.1.1.)

⑦제2항의 교육업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원업적평가규정」 제 11조의 제2항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생지도영역의 상담지도 연간 15점 이상

2. 평가대상 기간 중 강의영역의 마이크로티칭 1회 이상 참여

[본조 신설 2014.11.6. 개정 2021.3.4.]

제23조(승진심사절차) ①교원의 승진임용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②승진임용을 위한 업적의 평가 절차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3장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21.3.4.]

제24조(승진의 제한)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제한기간을 기산한다.

제4장 재임용

제25조(재임용)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임용한다.

제26조(재임용시기)교원의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행한다.

제27조(재임용요건) ①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2년으로 임용된 신규교원 중 교수에 대해서는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정하는 정년보장심사기준에 따라 정년보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까지 임용한다.

② 임용기간이 경과한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교육 및 연구업적은 다른 영역의 잉여 점수를 이관 받지 못한다. 다만, 봉사 및 산학협력 업적의 경우 영역별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업적별 최저기준점수의 50%까지 다른 영역의 잉여 점수로 대체가능하다. (개정 2012.1.1, 2012.7.22, 2016.4.28)

재임용 직급	평가 대상 기간	영역별 최저기준점수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인문사회 예체능계	이공계
조교수	5년	350	200	150	50	100
부교수	6년	420	240	180	60	12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방 임상교원은 재임용 대상 직급에 관계없이 재임용에 필요한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는 없으며, 최저종합평점은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매 학기 평균 70점으로 한다.

④(조항 삭제 2014.4.11)

⑤(조항 삭제 2012.1.1)

⑥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자의 재임용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7.22., 2016.4.28)

평가 대상 기간	영역별 최저기준점수				
	교육 업적	연구 업적	봉사 업적	산학협력 업적	
				인문사회 예체능계	이공계
2년	140	80	60	20	40

⑦제6항의 연구업적에는 최소기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게재 논문점수 60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체능계 교원들은 일반교원의 직급별 기준의 1/2을 적용한다. 단, 산학협력업적 중 산학협력연구활동영역의 점수로 최소기준점수의 100%까지 대체할 수 있다. (항 신설 2012.7.22.)(개정 2013.01.15., 2014.2.27)

⑧(개정 2009.11.17)(조항 삭제 2012.1.1)

⑨제2항의 연구업적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소기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게재 논문점수가 포함되어야 하며, 예·체능계 교원들은 일반교원의 직급별 기준의 1/2을 적용한다. 단, 산학협력업적 중 산학협력연구활동영역의 점수로 최소기준점수의 100%까지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3.01.15., 2014.2.27)

1. (삭제 2012.7.22)

2. 조교수 : 150점 이상 (개정 2012.7.22)

3. 부교수 : 180점 이상

[조문 개정 2009.2.12., 2012.1.1.]

⑩제2항 및 제6항의 교육업적에는 학생지도 영역의 상담지도 점수가 연간 15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6.)

⑪신규 임용된 교원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신입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

설 2021.3.4.)

제28조(재임용절차)①임용권자는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업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재임용 유예)①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임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을 유예받은 교원은 재임용 유예기간 내에 당해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임용 유예는 당해 직급에서 1회에 한한다.

③제1항에 의해 재임용이 유예된 교원이 유예기간 동안 재임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 퇴직한다.

④재임용 대상교원이 휴직중인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재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장 업적평가

제30조(업적평가) ①총장은 매 학년도마다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업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③교원업적의 범위,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④교원의 평가계열 구분은 대학 교육편제단위의 5대 계열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2.27.)

제31조(업적평가의 활용)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는 해당 교원에 대한 승진임용,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 해외 파견, 안식년, 우수교원선정 및 연구장려금 지급 등 교원의 인사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32조(업적우수교원) ①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별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우수교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조항 삭제 2012.1.1)

제6장 신분보장 및 휴직 등

제33조(신분보장)①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형의 선고
2. 징계처분
3. 학부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4조(직위해제) ①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개정 2016.4.28)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16.4.28)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4.28)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6.4.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4.28)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 ⑦임용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35조(휴직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05.26.)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15.05.26., 2017.2.17)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신설 2016.4.28)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2.1.1)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관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신설 2017.2.28)
-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6조(휴직기간) 제35조 휴직사유에 의한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 제35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 :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 : 3월
4.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휴직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1)
5.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휴직기간 : 그 고용기간
6. 제35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6.4.28., 2016.9.1)
- 6의2. 제35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6.9.1)
7.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휴직기간 : 3년 이내
8. 제3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휴직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1)
9.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휴직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1.)
10. 제3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휴직기간 : 1년 이내 (신설 2017.2.28)

제37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은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8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06, 2016.4.28)

②제3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06., 2016.4.28., 2017.3.30)

제39조(복직) ①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휴직 중인 교원은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복직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퇴직의 구분) 퇴직은 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제41조(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사망하는 경우
2. 정년에 달하는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42조(의원면직) 임용권자는 교원의 원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제43조(이직동의) 교원이 퇴직하여 타 기관으로 이직하고자 할 때는 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임용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

제44조(직권면직) ①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5조(명예퇴직)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12)

제45조의2(교환교수 및 국내파견교수) ①해외 자매결연대학 및 국내기관에 교환교수 및 국내파견교수로 본 교 교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2006.10.26., 개정 2014.4.11)

②제1항의 교환교수 및 국내파견교수는 모든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6.10.26)

③교환교수 및 국내파견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2006.10.26)

제7장 복무, 보수 및 상벌

제46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상벌) ①교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표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91(2006.5.25))

①이 전면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는 재임용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207(2006.10.27))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142(2008.4.25))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248(2008.8.26))

이 규정은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307(2009.2.12))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은 부교수 승진의 경우 2010년 4월, 교수 승진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재임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조교수의 경우 2010년 9월, 부교수 의 경우 2012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④(2007년 9월 임용된 전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임용된 전임강사가 2008학년도 1, 2학기의 교육 및 봉사 업적 점수의 2배에 해당하는 점수가 종전 규정의 교육 및 봉사 영역별하한점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교육 및 봉사영역의 최저기준점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141(2009.6.29))

이 규정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168(2009.8.11))

이 규정은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244(2009.11.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 제6항 및 제27조 제7항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112(2011.5.2))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98(2012.3.26))

①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의 조교수 승진은 2013년 4월부터, 부교수 승진은 2014년 4월부터, 교수 승진은 2015년 4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재임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개정규정의 전임강사 재임용은 2013년 3월부터, 조교수 재임용은 2014년 3월부터, 부교수 재임용은 2015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299(2012.9.26))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개정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개정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③(전임강사인 계약제 임용 교원의 재계약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의 재계약조건은 조교수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기존의 임용계약을 따른다.

④(승진·재임용 소요년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최종직급이 조교수인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은 이전 규정의 부교수로의 승진 및 조교수의 재임용 기준을 부교수 승진임용일까지 적용한다.

⑤(호봉 재확정 경과조치) 2012년 7월 22일자로 조교수 직급을 부여받은 교원의 조교수 직급에 대한 호봉 재확정은 2012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14(2013.01.15))

이 규정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52(2013.03.13))

이 규정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371(2014.11.06))

이 규정은 2014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173(2015.05.26.))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114(2016.04.28.), 144(2016.06.08.))

①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6항은 2016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 제2항의 최저기준 점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제22조제2항의 변경된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의 연 평균취득 점수, 점수산출 방식,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개정된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간 중 2015학년도까지의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의 연 평균취득 점수, 점수산출 방식,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개정 전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1. 평가대상기간 중 2015학년도까지의 연 평균 취득 점수

- 가. 교육업적 : 75점
- 나. 연구업적 : 75점
- 다. 봉사업적 : 35점
- 라. 산학협력업적 : 10점(인문사회, 예체능계), 20점(그 외 계열)

2. 평가대상기간 중 2016학년도 이후의 연 평균 취득 점수

- 가. 교육업적 : 75점
- 나. 연구업적 : 65점
- 다. 봉사업적 : 35점
- 라. 산학협력업적 : 10점(인문사회, 예체능계), 20점(그 외 계열)

3. 2016년 10월 교수 승진임용 대상교원의 교육, 봉사, 산학협력업적의 점수산출 방식은 적용 규정별 평가기간 점수 $\times$ 1.25 배로 한다.

③ (제27조 제2항 및 제6항의 최저기준 점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제27조제2항의 변경된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의 연 평균취득 점수, 점수산출 방식,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개정된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간 중 2015학년도까지의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의 연 평균취득 점수, 점수산출 방식, 평가항목 및 배점은 개정 전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1. 평가대상기간 중 2015학년도까지의 연 평균 취득 점수

- 가. 교육업적 : 70점
- 나. 연구업적 : 60점
- 다. 봉사업적 : 30점
- 라. 산학협력업적 : 10점(인문사회, 예체능계), 20점(그 외 계열)

2. 평가대상기간 중 2016학년도 이후의 연 평균 취득 점수

- 가. 교육업적 70점
- 나. 연구업적 40점
- 다. 봉사업적 : 30점
- 라. 산학협력업적 : 10점(인문사회, 예체능계), 20점(그 외 계열)

3. 2016년 9월 부교수 재임용 대상교원의 교육, 봉사, 산학협력업적의 점수산출 방식은 적용 규정별 평가기간 점수 $\times$ 1.5 배로 한다.

4. 2017년 3월 및 9월 부교수 재임용 대상교원의 교육, 봉사, 산학협력업적의 점수산출 방식은 적용 규정별 평가기간 점수 $\times$ 1.2 배로 한다.

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258(2016.09.30.))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63(2017.02.28.))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78(2017.03.08.))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105(2017.03.30.))

이 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184(2019.7.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교원의 구분) 제1항, 제3항, 제3조(적용범위) 제2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60(2021.3.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승진요건) 제7항제2호, 제27조(재임용요건) 제11항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08.8.26)

교원경력년수 환산율표

구분	경력내용	환산율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 중앙공무원교육원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 대학·전문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경력	100%
	- 대학 또는 전문대학 강사의 교육경력(환산경력 5년 이내)	
	. 주당 5시간 이하	30%
	.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를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50%
	- 대학(전문)의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경력	50%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50%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50%
	-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50%
	다. 조교 및 체육코치 등(환산경력 2년 이내)	
	- 대학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 코치	60%
연구경력	가. 최종 학위취득자	
	- 박사학위 취득자(환산경력 3년 이내)	100%
	- 석사학위 취득자(환산경력 2년 이내)	100%
	나.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	
	- 박사학위 수료자(환산경력 3년 이내)	70%
	- 석사학위 수료자(환산경력 2년 이내)	70%

구분	경력내용		환산율
연구경력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연구한 경력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학교장 명으로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한함)		100%
	라.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연구한 경력		
	- 연구원법, 연구원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70%
산업체등 경력	가. 국가기관등 근무경력		
	-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근무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나. 민간기업체등 근무경력		
	-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민간 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50%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100%
	- 변리사, 변호사 개업기간		100%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건축사 개업기간		70%
	- 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1등 항해사(기관사) 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70%
	라. 의사 등 근무경력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에 종사한 경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종사한 경력 제외	전문의사, 인턴, 레지던트 약사, 한의사	100%
		전임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70%
	-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100%
	- 약대 졸업자의 약국 개업기간		100%

구분	경력내용	환산율
산업체등 경력	마. 성직자 근무경력	
	-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50%
	-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50%
	- 원불교학과 졸업자가 교무로 재직한 경력	50%
	바. 외국공관에 근무한 경력	70%
	사.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 및 단원 (환산경력 2년 이내)	60%
	아. 기타 전문 직무에 종사한 경력 및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	30%
기타	가.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의무복무기간	100%
	- 직업군인	50%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산입한다. * 경력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